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2. 6. 15 선고 2021가단3183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덕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하스

담당변호사 강현구

변 론 종 결 2022. 4. 27.

판 결 선 고 2022. 6.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35,058,716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2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및 피고의 부친인 망 C는 망 D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99가단11874호로 교환계약의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의 진행 도중 C는 2000. 7. 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으로부터 D 소유의 토지인 김천시 E 답 2,185㎡ 및 경북 군위군 F 답 1,719㎡ 등에 관한 부동산가압류결정(위 법원 2000카단1579호)을 받았다.

나. 위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01. 1. 4. 망 C가 사망하여 그 자녀들인 원고, 피고 및 G이 위 소송을 수계하였고, 위 소송 결과 원고, 피고 및 G은 2002. 6. 2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으로부터 “망 D는 원고, 피고 및 G에게 각 181,463,333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1999. 1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관련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으며, 관련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그 후 원고는 확정된 관련 판결에 기하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H로 망 D 소유의 김천시 E 답 2,185㎡ 등에 관한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04. 8. 20. 위 법원으로부터 강제경매 개시결정을 받았고, 그 후 진행된 강제경매(이하 ‘1차 경매’라 한다) 절차에서 2009. 8. 25. 원고는 신청채권자로서, 피고는 배당요구권자로서 각 배당받았다.

라. 또한 피고는 확정된 관련 판결에 기하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I, J(병합)로 주식회사 K 소유의 김천시 L 대 2921.6㎡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한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08. 10. 14. 위 법원으로부터 강제경매 개시결정을 받았고, 그 후 진행된 강제경매(이하 ‘2차 경매’라 한다) 절차에서 2010. 9. 30. 원고는 망 C가 신청한 부동산가압류결정의 승계인으로서, 피고는 신청채권자로서 각 배당받았다.

마. 한편, 피고는 확정된 관련 판결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채권의 실행을 위해 망 D 소유의 경북 군위군 F 답 1,719㎡ 외 4필지에 관하여 망 D의 상속인들 명의로 대위상속등기를 마친 후 위 토지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M로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9. 5. 16. 위 법원으로부터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그 후 진행된 강제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절차에서 2020.

1. 22. 피고는 신청채권자로서 105,176,150원을 배당받았으며, 원고는 망 C에게 배당된 35,338,129원 중 망 C의 상속인으로서 11,779,377원을 배당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¹⁾ 피고는 이 사건 경매 절차에서 단독으로 배당받기 위해,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경매 절차의 진행 사항을 물어보면 그 절차가 연기되고 있다는 등으로 원고에게 수차례 거짓말을 하여 원고가 이 사건 경매 절차에서 배당받을 기회를 박탈하였다. 만일 원고가 이 사건 경매 절차에서의 배당에 참여하였다면,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경매 절차에서 배당받은 105,176,150원 및 망 C에게 배당된 35,338,129원을 합산한 총 140,514,279원(= 105,176,150원 + 35,338,129원) 중 원고의 배당비율인 1/3에 해당하는 46,838,093원(= 140,514,279원 × 1/3)을 배당받을 수 있었는데, 원고의 이 사건 경매 절차에서의 배당 참여를 방해한 피고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경매 절차에서 단지 11,779,377원만을 배당받았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으로서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경매 절차에서 배당받지 못한 금액인 35,058,716원(= 46,838,093원 - 11,779,37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불법행위에 있어서 고의·과실에 기한 가해행위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는데(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33193 판결,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2272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경매 절차에서의 배당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거짓말을 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② 오히려 이 사건 경매 절차 이후 대한민국(소관 :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은 이 사건

경매 절차에서의 배당기일에 참석한 원고 및 피고에 대하여는 배당금의 교부가 이루어졌으나, 위 배당기일에 불참한 G에 대하여는 배당금의 교부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민사집행법 제160조 제2항에 따라 G를 피공탁자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금제70호로 11,780,242원을 공탁한 점, ③ 위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경매 절차에서의 배당기일에 참석한 이상 원고로서는 만일 자신이 생각하는 정당한 배당금액보다 적은 액수의 배당금액을 받게 되었을 경우 위 배당기일에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당한 배당금액의 지급을 요구할 수도 있었던 점, ④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경매 절차에서 피고의 말만을 만연히 신뢰하기보다는 보다 적극적으로 이 사건 경매 절차가 진행된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 문의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경매 절차의 진행 상황을 정확히 확인할 수도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하석찬

1) 원고는 당초 이 사건 청구원인을 부당이득반환청구로 주장하였으나, 제2회 변론기일에 위 주장을 철회하고 이 사건 청구원인을 피고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로 변경하였다.